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산업경제위원회  
2002. 12. 3.

##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02년 10월 31일

다. 상정 일자

○ 제207회 정례회

-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2. 12. 3) 상정, 질의답변, 의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박 경 국)

가. 제안 이유

- 생명과학산업과 전통의약을 21세기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재편을 통하여 고부가 가치화를 추구하고자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법인명칭을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로 함 (제2조)
- 전통의약품 및 한방신약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제5조)
- 지원센터의 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함 (제6조)
-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 지원센터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을 정관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하도록 함 (제9조)
- 지원센터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근무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 옹 회)

- 생명과학산업과 전통의약을 우리도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재편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효율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는 업무감독과 필요시 조사,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별개의 조항으로 삽입해야 할 것과
- 중앙, 도, 시군 등에서 출연하여 조성된 출연금 외에 발생하는 기타 수입금에 대한 처리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또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10호와 제9조가 중복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 원안 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별 첨

-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 충청북도지사제출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5
----------	----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정이유

- 생명과학산업과 전통의약을 21세기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재편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자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골자

- 법인명칭을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로 함 (제2조)
- 전통의약품 및 한방신약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제5조)
- 지원센터의 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원하는 기관 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함 (제6조)
-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 지원센터 해산시에는 잔여재산을 정관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하도록 함 (제9조)
-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 근무 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의안전문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의약품산업 등 생명과학산업을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무소) 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제4조(정관) ①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지원센터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②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2. 한방신약 연구개발 지원
3. 산·학·연 공동기자재 활용 및 교육지원 등

제6조(재산출연) 지원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 및 지원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7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지원센터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 ② ~ ③ (생략)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

###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생략)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특수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대학교수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기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 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 ④ (생략)